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2년 5월호

## Contents

### 회계정보

-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시행

### 세무 및 법률정보

-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법 등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http://www.crowe.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40 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됩니다.

개정 배경

회계정보 등

■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시행

[출처: 금융감독원, 2022.05.02]

주요 내용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통합 품질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운영하지 않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차감하는 등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부실한 품질관리에 대한 불이익 조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감사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보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1 개정 배경

□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회계개혁」의 주요 과제로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19.11.1일 시행)되었습니다(현재까지 40개 회계법인, 별첨 참조).

○ 이는 국민경제와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보다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에, 정부는 상장사 감사인 진입(등록)요건\*을 통합 감사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감사품질과 관련된 핵심사항을 위주로 설정하였습니다.

\* ①4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②회계법인 규모에 비례하는 품질관리 인력 확보, ③통합품질관리체계 구축, ④감사보고서 심리체계 구축, ⑤성과평가 시 품질평가지표 활용 등

□ 그러나, 그동안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해 온 결과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의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품질관리제고 노력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심리 등 감사품질의 핵심적인 사항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과거 품질관리감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등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계법인도 있었습니다.

※ 2019-2020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2022.1.24.일 보도자료)  
2021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2022.4.28.일 보도자료)

□ 이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의 감리결과 외부공개제도 보다 더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한편, 감사인 지정제도와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등 기업회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2 주요 내용

가.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

①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 다양화 (시행령 §16②, 규정 §14⑨)

□ (현행) 감사품질관리에 핵심적인 요소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가 등록취소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는 이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등록취소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

○ 이에, 품질관리감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등록요건 위반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어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자체적인 시정 노력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개선)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 시정권고,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과 지정대상 회사를 각각 감사인 지정점수(소속 회계사수 등을 기반으로 산정)와 자산총액 순서로 배열하여 매칭하는 방식

\*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부과받은 회계법인은 점수에 상응하는 기업의 숫자(원칙적으로 30점당 1개 기업) 만큼 지정에서 제외

○ 감사인 감리 중 등록요건 위반 발견 시 시정권고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위반정도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최대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될 것입니다.

※ (사례) '17년 A회계법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위반에 대해 지정제외점수 4,070점 부과

○ 해당 감사인은 증선위가 정한 기간까지 시정권고를 이행해야 하며, 시정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② 등록요건 유지여부 감리 착수 근거 마련 (시행령 §29, 규정 §23⑦)

□ (현행)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감리는 제보가 접수되거나 증선위가 감리를 요구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 (개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서 접수 등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은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취소 시 이해관계자 보호절차 마련 (규정 §8의2)

□ 상장사 감사인 등록이 취소된 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중인 상장회사에게 감사인 변경 절차를 안내하는 등 이해관계자 보호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기업부담 완화

① 지정감사인의 잦은 교체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 (규정 별표4)

□ (현행) 지정감사(2~3년) 수감중인 기업이 다른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다시 받는 경우, 지정감사인이 교체되어 기업과 감사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 (개선) 지정감사 중 지정사유가 재차 발생하더라도 최초 감사인 지정기간(최대 3년) 내에는 동일 감사인이 지정됩니다.

※ (참고 예시) 지정사유가 발생한 상장회사의 지정기간 및 감사인 예시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A사유발생 (3년)	B사유발생 (3년)	C사유발생 (3년)			
(현행)		감사인A	감사인B	감사인C		
		총 지정감사기간 5년				
(개선안)		감사인A			감사인D	
		총 지정감사기간 5년				

② 부당한 요구를 한 지정감사인 취소 절차 간소화 (규정 §14⑧)

□ (현행)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공회의 징계(윤리위)가 선행된 후 지정감사 취소가 가능하여 기업이 분쟁중인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개선)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 한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현행) 신고→자율조정→한공회 윤리위 징계→지정취소·지정제외점수 부과  
(개선) 신고→자율조정→지정취소→협의체조사→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징계부과(한공회)

○ 다만, 기업이 지정받은 감사인 교체를 위해 동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관계 조사는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③ SPAC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규정 §12②)

□ (현행) 기업이 감사인 지정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무기준\* 적용 시 SPAC합병법인은 과거 재무기준을 합병 전 SPAC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3개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또는 부(負)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

○ SPAC은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의 회사로 영업활동이 없어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합병 후 존속법인을 SPAC으로 할 경우 감사인 지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었습니다.

□ (개선) SPAC상장법인의 합병 전 재무기준은 사업의 실질 주체인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기준으로 재무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 기타 외부감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는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평가시기,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규정 §23)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아닌 일반 회계법인과 감사반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투명성보고서 공시(인터넷 홈페이지) 대상을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공시해야할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시행령 §28①, 규정 §22②)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아닌 일반 회계법인과 감사반은 공시대상에서 제외

\*\* 최근 3개사업연도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추가

□ 그 외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정비, 회계법인 수시보고서 항목 정비 등 그동안 기업회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향후 감독방향

3 향후 감독방향

□ 정부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올해부터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시 등록요건 유지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 품질관리기준의 핵심사항이 등록요건과 유사한 만큼 추가적인 감리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요건(외부감사규정 별표 1) 등을 참고하시어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용어 설명 >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 상장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통합 품질관리체계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 감사인 지정제도 :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감사인 지정점수 : 지정감사인을 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회계법인의 점수로 회계사 수 및 경력기간, 회계감사 매출액 비중 등을 기반으로 산정
-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회계법인에게 증선위가 부과하는 조치로 누적 점수 90점은 자산 5조원이상, 60점은 자산 4천억원이상, 30점은 자산 4천억원 미만 1개 회사를 지정 회사에서 차감
-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 비상장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별첨) 상장사 등록 감사인 현황

별첨

구분	회계법인명	소속 등록회계사수*	주권상장법인 감사계약 회사수(2021)**		
			자유선임	지정	계
가군 (4사)	삼일	2,265	147	121	268
	삼정	1,910	130	90	220
	한영	1,175	133	61	194
	안진	1,015	67	43	110
나군 (8사)	삼덕	628	94	105	199
	대주	467	117	84	201
	신한	280	69	50	119
	한올	257	58	34	92
	우리	214	42	42	84
	이촌	197	51	13	64
	성현	157	29	26	55
	서현	128	13	20	33
다군 (18사)	삼도	137	16	15	31
	현대	134	18	13	31
	삼화	133	23	17	40
	인덕	123	24	21	45
	태성	117	26	21	47
	대성삼경	102	29	20	49
	신우	102	26	15	41
	다산	92	23	15	38
	한미	81	23	6	29
	대현	80	12	9	21
	정진세림	79	24	15	39
	동현	78	22	14	36
	이정	74	14	12	26
	예교지성	69	6	10	16
	안경	67	27	10	37
	진일	67	9	16	25
	도원	65	8	13	21
	라군 (10사)	서우	63	12	11
동아송강		65	9	12	21
선일		59	20	9	29
예일		55	6	10	16
세일원		54	9	10	19
광고		52	11	11	22
한길		52	0	11	11
정인		51	6	8	14
리안		49	13	8	21
선진		47	10	7	17
정동	45	9	9	18	

\* 회계법인 군분류: '21.10월말 / 소속 등록회계사수: '22.3월말

\*\* 주권상장법인 감사계약 회사수: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한 연도로 구분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윤석열 정부  
110 대 국정과제

**세정동향,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외**

2022년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대 국정과제 중 조세분야와 관련된 내용으로, 조세제도 개편 방향을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

- '22년 중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 서울체계 등 근본적 중부세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검토

○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sup>1</sup>

\*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22.5.10)에 따라,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중과세가 배제되어 기본세율(6~45%)이 적용됨

-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 취득세 개편

-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강화**

○ 투자, 고용, 리쇼어링 활성화

- 디지털,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 강화

○ 세대 간 기술, 자본 이전 촉진

- 세대 간 기술, 노하우, 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기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 합리화



-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 개인투자자(초고액<sup>2</sup>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 \*2. 주식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
  -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
-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적정수준 상향 및 재산요건 합리화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확대
    -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 추진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2022년 중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 法: 부가가치세법, 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則: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令75)**
  - 종전 규정 상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를 함께 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개정 규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였음 ('22.2.15.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착오로 인하여 공급시기 이전에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令75)**
  - 종전 규정 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개정 규정에서는 세금계산서 선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로 확대하였음 ('22.2.15.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法17③)**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①공급시기가 도래'하고 '②대가를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정 규정에서는 '②대가수령 요건'을 삭제하였음 ('22.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令17③)**
  - 종전 규정 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였으나, 개정 규정에서는 이를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함 ('22.2.15.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令42)**
  - '22. 6.16. 이후 공급하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令68) 및 세액공제(法47, 令89)**
  - '23.7.1. 이후 공급분부터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중전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발급건수 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적용기한: 2022.7.1. ~ 2024.12.31.)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法53의2⑥⑦)**
  - '22.7.1. 이후 전자적용역 공급분부터 국외사업자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내역(전자적용역의 종류,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용역제공일자, 공급받는자 및 사업자 해당여부 등)을 확정신고기한 후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 국세청장이 거래명세 제출 요구 시 60일 이내에 전자적용역 거래명세서(則별지 제37호의3 서식) 제출해야 함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令99)**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sup>3</sup>에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법인세법 제94조의2) 추가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득·법인세 납세의무자
  
-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法60⑤)**
  - '22.1.1. 이후 공급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되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상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주요  
개정사항  
(’22.4.14. 시행)**

2021. 4. 13.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이전 의무화**
  - 기존에는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만 의무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22.4.14. 부터는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지급되어야 함
  -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 그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이상을 사외 예치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설사 최소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으나, ’22.4.14. 부터는 최소적립금 부족분의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22.4.14. 이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받은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최소적립비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통보된 경우 재정검증결과 통보 시점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적립 부족을 해소하여야 함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의무화**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 기업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그 동안은 사용자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는데 원리금보장상품 위주 운용에 따른 수익률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어, 보다 합리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임
    - 위원회는 5 ~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 또한 목표수익률 설정, 자산배분 등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운용계획서, 재정안정화계획서 등을 심의·의결하게 됨.
  - 사용자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 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 2022.05.04)

(사실관계)

- A는 소비성 서비스업 외 업종을 영위하는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임.

연도	청년상시근로자수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18년	2	1
19년	0	4
20년	1	4
21년	1	4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1안>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
- <2안> 한도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회신)

-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 주요 개정내용에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및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 명시하고 있음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취득 후 무증자 합병한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사전-2022-법규법인-0230, 2022.04.21)

(사실관계)

- '21.4.22. A법인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B법인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고, 21.11.1. B법인을 무증자 방식으로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함.

(질의내용)

- 내국법인(인수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고 같은 사업연도 중 피인수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내국법인(A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B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로서 B법인의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한 경우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외국본사가 전력장비공급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은 외국본사의 한국지점이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9, 2022.04.26)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국내지점’)은 선박 및 해양플랜트에 설치되는 선박추진, 전기제어 장비 등을 공급하는 노르웨이 기업(이하 ‘외국본점’)의 국내 지점
- 외국본점은 외국선주사와 ① 전력장비 공급계약과 ② 전력장비의 설치 감독, 시운전 등의 감리용역 계약을 직접 체결
- 외국본점은 외국선주사와 체결된 계약과 관련한 전력장비와 용역매출 대금을 외국선주사로부터 전부 수취
  - 외국본점은 수취한 대금 중 인건비, 여비교통비, 외주비, 임차료 및 제세공과금 등 국내지점의 지출경비를 국내지점에게 송금

(질의내용)

외국본점은 외국선주사와 전력장비공급과 감리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을 각각 별도로 직접 체결하고, 국내지점은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전력장비 설치·시운전 감리용역(이하 ‘본건용역’) 제공

- 외국본점은 본건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후 그 상당액을 국내지점에 운영자금 형태로 송금
- 본건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이 쟁점임.

(회신)

- 국외 소재 외국법인(이하 “甲”이라 한다)이 다른 외국법인(이하 “乙”이라 한다)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이하 “본건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이하 “丙”이라 한다)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 그리고 동 계약의 대금을 乙로부터 甲이 지급받은 후, 본건용역을 수행한 丙이 甲으로부터 운영경비 형태로 외화를 송금받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i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